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간사등) ①(생략)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간사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6. 9.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9.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가. 개정이유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원화(인증, 소인분리)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무처리방법을 일원화(인증, 소인 동시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항)

○구청장의 공인증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증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94. 11. 1.부터 시행된 동사무소 조직체계가 사무장제에서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계직체계가 신설됨으로써 동장의 공인증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각각 관수하도록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구청장과 동장의 민원사무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인증과 소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104
번호	

제출년월일: 1996. 9. .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원화(인증, 소인 분리)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무처리방법을 일원화(인증, 소인 동시처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항).

○구청장의 공인증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증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3. 개정근거

○사무관리규정(1996. 6. 29. 대통령령 제15063호) 제41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주임”을 “민원봉사계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의 공인증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

⑥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증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②~③(생 략) ④동장의 공인증 일반사무용은 <u>사무장</u> 이, 민원사무용은 <u>민원주임</u> 이 관수한다. <u>(신 설)</u>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 <u>시민생활계장</u> <u>민원봉사계장</u> ⑤구청장의 공인증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 ⑥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증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안)심사보고서

1996.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9. 1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이 은 규

가.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하는 바, 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나. 주요개정골자

○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년 2회로 함(안 제2조)

○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주민공개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등 주민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음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조례안은 '94. 12. 22.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이상 해당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바, 주민공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구보, 구계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구보는 매회 60부를 발행하여 구청 각실과 동사무소에만 배포하고 구계시판의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다소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종합홍보지인 「내고장 마포」 소식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첨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수정,